

#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한 매뉴얼

2024. 3.





# CONTENTS



## I. 일러두기 5

## II. 하도급법 적용대상 9

## III. 하도급대금 보호 제도 13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 14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 22

## IV. 위기시 대응방안 27

## V. 분쟁조정 및 신고 등 45



# I

## 일러두기



# 요약

하도급법은 원사업자 부실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수급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를 예방하고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발주자의 직접지급 제도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의 워크아웃, 법인회생 및 법인파산 등 위기 상황별 대응 방안을 참고하시어 유사시 관련 피해를 최소화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① 하도급법 적용 대상

이하 하도급대금 보호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건설위탁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하도급 거래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필요

## ②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보호제도

구분	주요 내용
하도급대금 지급 (하도급법 제13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물 수령일(건설위탁은 인수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지급(지연이자 15.5%)</li> <li>• 발주자로부터 기성(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지급</li> <li>• 발주자로부터 받은 현금비율 미만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금지 및 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의 지급기간을 초과하는 어음교부 금지</li> </ul>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하도급법 제13조의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보증(계약금액의 10/100)을 해야 함</li> <li>•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불능 등의 사유로 수급사업자가 보증기관에 지급보증금 청구시, 보증기관은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해야 함</li> </ul>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하도급법 제14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주자는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급사업자가 건설위탁 등을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함</li> </ul>

## ③ 위기사 대응방안

구분	대응방안	주의사항
워크아웃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청구	신속히 보증금을 청구할 필요
	발주자 직접지급 요청	확정일자를 받아 선순위 확보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미상환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청구
	가압류신청	신속히 가압류 신청, 관공공사 우선 물색
	유치권 행사	유치권 행사 적법요건 확인
법인회생	대물변제	신속히 대물변제의 목적물 결정
	채권신고	공익채권과 회생채권을 구분하여 대응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청구	신속히 보증금을 청구할 필요
	발주자 직접지급 요청	채권 신고 후 직접지급 요청
법인파산	계약이행/해지 여부 판단	경영판단 필요
	기타 보전절차	회생절차 시 가압류보다는 유치권 등 활용
	채권신고	재단채권과 파산채권을 구분하여 대응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청구	신속히 보증금을 청구할 필요
법인파산	발주자 직접지급 요청	채권 신고 후 직접지급 요청
	계약이행/해지 여부 판단	경영판단 필요
	기타 보전절차	파산절차 시 가압류보다는 유치권 등 활용





## 1. 일러두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여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하도급법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가 자신의 이익이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도급대금의 지급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력한 만큼의 정당한 대가를 적시에 보상하는 내용으로 하도급 관계에서 핵심적인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하도급법에서는 하도급대금의 지급시기, 지급수단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규정하는 동시에 원사업자 부실 등으로 인해 하도급대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최근 원자재 가격상승, 고금리 지속 등 복합적 요인으로 부동산 PF 부실화 위험이 증가하면서 건설분야 유동성 위기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건설사 부실로 인한 피해는 구조조정 대상기업의 위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협력업체 피해로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중소 하도급업체는 대형 건설업체와 달리 재무구조가 취약하고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해 수개월의 자금 경색으로도 도산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 사전에 하도급대금 채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신속히 대처하여야 합니다.

이에 하도급법 상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주요 제도를 설명하여 사업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유사시 수급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안내하고자 본 매뉴얼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본 매뉴얼 활용 시에는 <II. 하도급법 적용대상>을 참고하여 문제되는 사안이 하도급법 적용대상 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이에 해당되는 경우 <III. 하도급대금 보호제도>의 적용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사업자의 워크아웃, 법인회생, 법인파산 등 유사시 관련 절차별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IV. 위기 시 대응방안>을 참고하시어 피해를 예방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단, 본 매뉴얼은 사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관련 제도 및 절차를 일반적인 관점에서 서술한 것이므로 실제 문제 발생 시에는 구체적 사실관계 및 사안의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응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매뉴얼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참고자료로서 향후 실제 사건 처리 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위법성 판단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주의!

※ 본 매뉴얼은 관련 제도에 대한 사업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된 참고자료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실제 사안에서는 구체적 사실관계 및 사안의 특수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II

## 하도급법 적용대상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보호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업자 간 '하도급 거래'가 존재해야 하고,  
특히 건설위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하에서는 하도급법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해 설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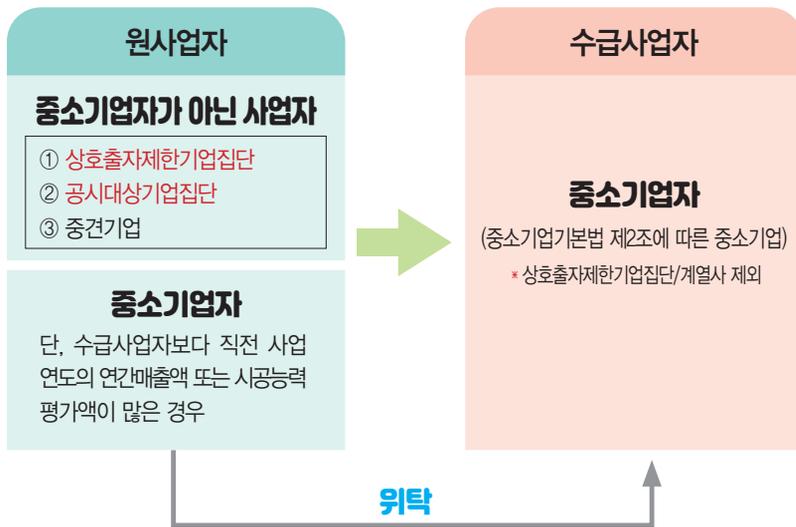




# 1.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란?

■ **(하도급거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의 건설 등을 위탁하고 수급 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위탁받은 것을 납품·인도하여 그 대가를 받는 행위를 의미 (하도급법 제2조 제1항)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 등을 위탁하는 거래(원도급거래)와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위탁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거래(하도급거래)를 모두 포함



● **(원사업자)** ① 중소기업\*가 아닌 사업자거나, ② 중소기업이라면 계약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이 수급사업자보다 많은 사업자로써 건설 등의 위탁을 한 자 (하도급법 제2조 제2항)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

\*\* 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가 아닐 경우 연간매출액을 말하며,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 자산총액으로 비교



- 다만, 일정 규모 미만의 중소기업자(건설위탁: 시공능력평가액 45억원 미만)는 원사업자에서 제외\*

\* 단, 공정거래법 제2조제12호의 계열회사 또는 제31조제1항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사업자는 매출규모와 상관없이 원사업자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수급사업자가 될 수 없음

● (수급사업자) 원사업자로부터 건설 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 (하도급법 제2조 제3항)



관련 법 규정

❖ 하도급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하도급거래”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그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그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원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2. 중소기업자 중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을 말하고, 연간 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그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

③ 이 법에서 “수급사업자”란 제2항 각 호에 따른 원사업자로부터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 2. 하도급법상 건설위탁이란?

- 하도급법에서 건설위탁이란, 건설업자\*가 그 업에 따른 시공자격 있는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경미한 공사\*\*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말함 (하도급법 제2조 제9항)

### \* 하도급법상 건설업자의 범위

- 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 ②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업자
- ③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 ④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동사업의 등록을 한 자
- ⑤ 「주택법」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 ⑥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등록업자
- ⑦ 「하수도법」 제51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등록업자
- ⑧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에 따른 등록업자
- ⑨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에 따른 시공자
- ⑩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5조에 따른 시공자

### \*\* 경미한 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경미한 공사

- \* 일반 건설공사는 5천만원 미만, 전문건설공사는 1천5백만원 미만 공사
- \*\* 접속기, 소켓 기타 개폐기 보수 및 교환공사 등

### 주의!

※ (예) 자동차 제조업체가 건설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한 경우는 하도급거래가 아니며 하도급법 적용을 받지 않는 단순 위탁에 해당

# III

## 하도급대금 보호 제도

건설사 부실로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 ① 하도급대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받거나
- ②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는 제도를  
적극 이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1.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제도

## 가. 제도 개요

-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일정금액의 하도급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을 보증해야 함 (하도급법 제13조의2)
- 한편,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함

### 주의!

- ※ 하도급 증액 변경계약 후 증액분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 되지 않은 경우, 증액분에 대한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증액 변경계약 시 추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징구가 필요**
- ※ 하도급 계약기간 변경시 보증기간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역시 초과된 계약기간에 대한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기간 변경시 보증기간 연장하여 보증서 재발급이 필요**

#### < 변경계약별 지급보증 의무 >

계약 내용	지급보증 내용
감액·1천만원 이하 증액 변경계약	지급보증 의무 없음
공기연장 계약	지급보증 보증기간 갱신
1천만원 초과 증액 변경계약	지급보증 보증액 갱신

### 주의!

- ※ 업무 담당자의 실수·무지로 인하여 지급보증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하므로 업무 담당자는 해당 제도를 숙지할 필요



**보증금액**

- ①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선금금)
- ② 공사기간이 4개월 초과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 [(계약금액-선금금)/공사기간(개월 수)]×4
- ③ 공사기간이 4개월 초과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주기가 2개월 초과인 경우  
: [(계약금액-선금금)/공사기간(개월 수)]×기성부분 대가 지급주기(개월 수)×2

**나. 지급보증의무 면제사유**

■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소액공사발주자의 대금 직접지급 등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아래의 조건을 충족 시 보증의무가 면제됨

**보증면제 사유**

- ①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 ② 하도급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원사업자-수급사업자 간 하도급법 제14조제1항제2호(발주자 직접지급)에 따른 합의를 한 경우
- ③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주의!**

※ 과거 면제사유로 인정됐던 ‘원사업자가 신용평가회사가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등급을 받은 경우’는 2020.4월부터 제외되어 **신용등급의 고려없이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해야 함

\* 단, 2020년 7월 7일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의 경우 신용등급을 통해 면제받을 수 있음

■ 보증면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유 소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을 해야함

● 최초 수급사업자가 타절되고 후속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초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했다는 이유로 후속 사업자에 대한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 지급보증 의무 위반에 해당되므로 유의할 필요



### 중요!

- ① 공동이행방식(공동도급)의 **공동도급 사업자는 지분비율에 의해 보증금액 결정**됨
- ② 공동이행방식에서 주관사만 지분율만큼 지급보증에 가입하고 비주관사는 가입하지 않는 사례 등이 존재하므로 **비주관사도 지급보증에 제대로 가입**이 되어있는지 확인할 필요
- ③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로 면제될 수 없음**

## 다. 보증기관에의 보증금 청구

■ 원사업자의 거래정지·부도·파산·폐업·회생절차 개시신청 등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보증기관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을 청구한 경우, 보증기관은 30일 이내에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함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6항)

● 다만, 보증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지급액에 대한 이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기관은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여 30일\* 동안 보증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음

\* 수급사업자와 합의 시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 연장 가능



### 하도급대금지급보증금 지급사유

- ① 원사업자가 당좌거래정지 또는 금융거래정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② 원사업자의 부도·파산·폐업 또는 회사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③ 원사업자의 해당 사업에 관한 면허·등록 등이 취소·말소되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법 제1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 ⑤ 원사업자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 ⑥ 발주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가압류를 하였거나 원사업자가 해당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 ⑦ 신용카드업자 또는 금융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원사업자가 해당 신용카드업자 또는 금융기관에 하도급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
- ⑧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로 처리된 경우
- ⑨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지급기일 이후 2회 이상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최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보증기관의 보증금 보류사유

- ① 보증기간 동안의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여부가 불명확하여 자료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명칭을 불문하고 계약이행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 중요!

※ 원사업자의 **신용하락**으로 인해 보증기관이 추가자료를 요구하여 보증이 지연되거나 보증기관이 보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직접지급 요청**을 할 필요

## 라. 지급보증 의무 위반시 제재

■ 지급보증 의무를 위반한 원사업자는 하도급법에 따른 제재대상에 해당

- ① **(시정조치)**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하도급법 제25조)
  - \* 시정조치 미이행 시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② **(과징금)**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하도급법 제25조의3)
- ③ **(벌칙)**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 (하도급법 제30조)
- ④ **(손해배상 책임)** 원사업자가 하도급법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배상책임을 짐 (하도급법 제35조)
- ⑤ **(벌점부과)** 시정조치 별로 벌점이 부과되며 일정 점수\* 초과 시 제재

\* 5점: 공공 입찰자격의 제한, 10점: 「건설산업기본법」상 영업정지

〈 시정조치 유형별 벌점 부과점수 〉

구분	경고		시정권고	시정명령		과징금 과징금	고발
	서면실태조사 관련 자진 시정	신고 또는 직권인지		자진 시정	일반		
점수	0.25점	0.5점	1.0점	1.0점	2.0점	2.5점	3.0점



## 관련 법 규정

### ❖ 하도급법 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①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지급수단이 어음인 경우에는 만기일까지를, 어음대체결제수단인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를 보증기간으로 한다)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원사업자의 재무구조와 공사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보증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사기간이 4개월 이하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뺀 금액
2.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 이내인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text{보증금액} = \frac{\text{하도급계약금액} - \text{계약상 선급금}}{\text{공사기간(개월 수)}} \times 4$$

3.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주기가 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text{보증금액} = \frac{\text{하도급계약금액} - \text{계약상 선급금}}{\text{공사기간(개월 수)}} \times \frac{\text{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text{지급주기(개월수)}} \times 4$$

② 원사업자는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의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잔여기간, 위탁사무의 기성률, 잔여대금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보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건설공사에 관하여 장기계속계약(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계속건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원사업자가 해당 건설공사를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을 통하여 건설위탁하는 경우 원사업자는 최초의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최초 장기계속건설하도급계약 시 약정한 총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지방공단
- ④ 제3항에 따라 수급사업자로부터 계약이행 보증을 받은 원사업자는 장기계속건설계약의 연차별 계약의 이행이 완료되어 이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반환받을 수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해당 수급사업자가 이행을 완료한 연차별 장기계속건설 하도급계약에 해당하는 하도급 계약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이 완료된 부분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의 효력은 상실되는 것으로 본다.
-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보증은 현금(채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의 지급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각 공제조합
  2.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3.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4.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
- ⑥ 제5항에 따른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급사업자가 보증약관상 필요한 청구 서류를 갖추어 보증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0일 이내에 제1항의 보증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지급액에 대한 이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증기관은 수급사업자에게 통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증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1. 원사업자가 당좌거래정지 또는 금융거래정지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2. 원사업자의 부도·파산·폐업 또는 회사회생절차 개시 신청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3. 원사업자의 해당 사업에 관한 면허·등록 등이 취소·말소되거나 영업정지 등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4. 원사업자가 제1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하도급대금을 2회 이상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원사업자가 제4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지급불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 ⑦ 원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지급보증서를 교부할 때 그 공사기간 중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이나 1회계연도에 건설위탁하는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대금의 지급보증을 하나의 지급보증서의 교부에 의하여 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하도급계약 이행보증 및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⑨ 원사업자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항 본문 또는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 보증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는 계약이행을 보증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⑩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보증에 대한 원사업자의 청구권은 해당 원사업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한 후가 아니면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

-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는 경우로서 1건 공사의 공사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2. 삭제 <2020. 4. 7.>
3. 하도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의를 한 경우
4.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이하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발주자가 원사업자 명의의 계좌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 ② 법 제13조의2제5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2. 「정보통신공사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제조합
3. 「주택도시보증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4.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5.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증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기관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 ③ 법 제13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보증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 지급액에 대한 이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보증기간 동안의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의 계약이행 여부가 불명확하여 자료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지급하여야 할 기성금(명칭을 불문하고 계약이행에 따른 대가로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경우

- ④ 법 제13조의2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일을 말한다. 다만, 수급사업자와 합의한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법 제13조의2제6항제5호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지급불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1. 원사업자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
2. 발주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제3채권자가 압류·가압류를 하였거나 원사업자가 해당 공사대금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3. 법 제2조제14항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또는 금융기관이 수급사업자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어음대체 결제수단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후 원사업자가 해당 신용카드업자 또는 금융기관에 하도급대금을 결제하지 아니한 경우
4.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으로 지급한 어음이 부도로 처리된 경우
5.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지급기일 이후 2회 이상 하도급대금 지급에 관한 최고를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대금지급 보증의무 면제대상이 되는 하도급대금지급관리시스템의 종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 I.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상생결제시스템 결제대금예치계좌 운영요령」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생결제시스템’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III. 14. 건설하도급 대금지급보증 (법 제13조의2)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 보증과 관련한 위법성 판단기준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가.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이나 공사기간이 조정되어 그에 따른 지급보증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조정 시점에서 변경된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추가로 대금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공사의 공사금액이 1,000만원 이하의 경미한 공사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나.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이미 보증한 사업자와 합병을 하거나 상속, 영업양수 등을 통하여 그 지위를 승계한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동 하도급대금에 대하여 별도의 지급보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대금지급보증의무 대상사업자가 대금지급보증면제대상 사업자의 원사업자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승계당시 잔여공사에 대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여야 한다.
- 다.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로 면제되지 아니한다.



##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제도

### 가. 제도 개요

- 발주자와 수급사업자는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영세한 수급사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발주자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건설위탁 등을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함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 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됨 (하도급법 제14조 제2항)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사유

- ①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 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절차도 포함
- ②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 ③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④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중요!

※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해야함

\* 단, 의사표시는 반드시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는 등 특별한 방식이 필요한 것은 아니나 확정 일자가 있는 내용증명을 통하는 것을 권장



## 나. 직접지급 범위와 금액

- 발주자는 수급사업자가 건설위탁 등을 수행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에서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도급대금 중 당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뺀 금액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하도급법 제14조 제4항)

### 중요!

- Q.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가 없는 것인지?
- A.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 내에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므로 **계약해지 유무와 상관없이** 발주자가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 의무가 남아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함

\*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

### 주의!

직접지급시 **주의해야할 사례**들은 다음과 같음

- 불완전한 직접지급 합의: 직접지급 합의가 지연되거나 발주자의 서명이 있는지 확인할 필요
- 변경계약(하도급대금 증액, 대금 지급기한 연장): 초과분에 대한 지급보증 혹은 새로운 직접지급에 대한 합의 필요
- 자체발주 공사: 직접지급제도가 아닌 지급보증제도 활용할 필요

## 다. 원사업자의 채권이 압류·가압류 되었을 시 선후·우열관계

- 원사업자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일반채권자에 의한 압류·가압류·전부명령(추심명령) 등과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청구권이 경합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
- 이 경우 '압류·가압류 등의 통지'와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송달된 시점(합의 시점)을 기준으로 먼저 도달한 쪽의 효력이 우선함
  - 그러므로 직접지급 요청 사유 발생 시, 발주자에게 가능한 한 빠르게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 표시를 하여야 함



### 직접지급 시 하도급 지킴이 이용 관련 주의사항

- 하도급지킴이: 공공분야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원수급사업자가 계약 체결 및 대금지급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발주자가 그 결과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 발주자가 하도급지킴이를 사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나 하도급률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초과분을 지급하는 경우 존재
  - 초과분에 대한 지급보증이 필요

## 라.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위반시 제재

■ 직접지급 의무를 위반한 발주자는 하도급법에 따른 제재대상에 해당

- ① **(시정조치)**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 (하도급법 제25조)
  - \* 시정조치 미이행 시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② **(과징금)**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하도급법 제25조의3)



### 관련 법 규정

#### ❖ 하도급법 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 ③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해당 하도급 계약과 관련된 수급사업자의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 지체 사실(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그 지급 지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 발주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 ⑤ 제1항에 따라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받기 위하여 기성부분의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원사업자는 지체 없이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 ⑥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수급사업자의 직접지급 요청은 그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그 의사표시가 도달되었다는 사실은 수급사업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 ② 발주자는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 등의 공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라 공탁(供託)할 수 있다.
- ③ 발주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대금지급의무의 범위에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
- ④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요건을 갖추고, 그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한 분(分)에 대한 하도급대금이 확정된 경우, 발주자는 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III. 14-1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법 제14조 제5항과 관련하여, 수급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원사업자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는 기한은 다음과 같다.

- 가. 법 제14조 제1항 제1호의 사유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성부분 내지 물량투입 등의 확인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5일
  - 나. 법 제14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에 따라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기성부분 내지 물량투입 등의 확인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5일
- 다. 다만, 사업자가 위 기한 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이행 예정시기 등을 적시하여 소명자료를 위 기한 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IV

## 위기시 대응방안





# 1.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시 대응방안

## 가. 워크아웃 개요 및 절차

- **(개념)**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은 회생가능성이 있는 부실징후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활동을 의미
- 워크아웃 시 법원의 관여 없이 해당 기업과 금융채권자의 자율적인 협약에 따라 채무조정이 이루어짐
- 이때 채무조정 수단으로 금융채권자가 보유한 금융채권에 대하여 부채상환 기간 연장, 원리금 감면, 우대금리 적용 등이 존재

**구별**

※ 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라 채권·채무관계를 조정하는 '회생절차',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의 100% 동의를 필요로 하는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과 구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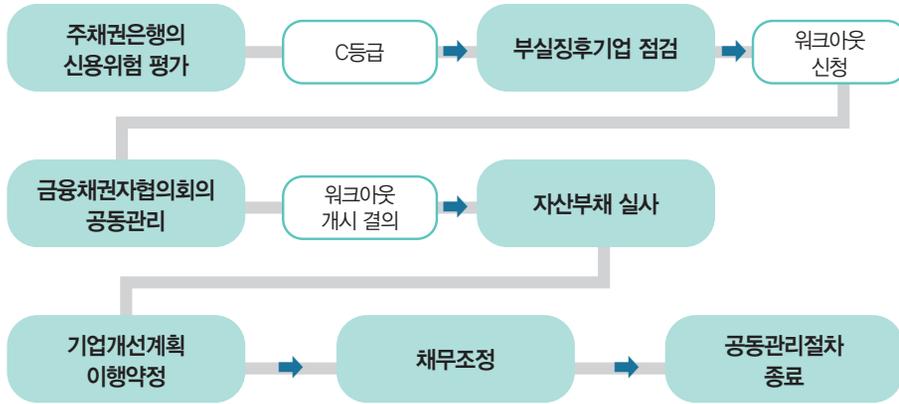
### < 워크아웃 개요 >

구분	내용
근거법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주관	금융채권자 (Out-of-Court Restructuring)
개시 결정	금융채권자협의회 채권액 기준 75% 동의必 (미충족시 회생·파산절차 진행)
대상 채무	금융채권·채무 동결 (일반 상거래채무 제외)
종료	채권액 기준 75% 이상 동의
특징	부분적으로 정상적인 기업 활동 가능 (단, 채권단 경영간섭, 재산처분 등 제약 발생 可)

- **(절차)** 워크아웃 신청 → 채권자협의회 결의 → 자산부채 실사 및 기업개선계획 작성 →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체결 → 채무조정 및 신규자금 지원 → 공동관리절차의 종료
- 워크아웃 불발시 통상적으로 법인회생(p.34) 또는 법인파산(p.40) 절차가 진행



### 〈 워크아웃 절차 〉



## 나. 워크아웃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대응 방안

### 1. 신속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청구

- ① 원사업자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관리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경우(원사업자 부도·파산·폐업·회생절차 개시에 준하는 지급불능), ② 하도급대금 2회 이상 미지급 등 청구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지체없이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청구할 필요
- 워크아웃이 개시되지 않는 경우, 회생절차 개시 가능성이 크고 회생절차시 하도급 채무가 조정될 수 있으므로 신속한 보증금 청구가 필요

#### 주의!

※ 하도급대금 증액에 관한 변경계약 후, 증액분에 대하여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 되지 않은 경우, 증액분에 대한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증액 변경계약시 추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징구할 필요가 있음

#### 주의!

※ 하도급 계약기간 변경시 보증기간이 변경되지 않은 경우, 역시 초과된 계약기간에 대한 청구가 불가능하므로 기간 변경시 보증기간 연장하여 보증서를 재발급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공동도급체에 속한 원사업자가 워크아웃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 외의 다른 구성 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으니 확인해 볼 필요

- 공동도급체의 다른 구성사업자 역시 대금을 미지급하는 경우, 보증금 청구가 가능

## 2. 발주자에 직접지급 요청

- 원사업자의 지급정지, 파산, 그 밖에 유사한 사유, 하도급대금 2회 이상 미지급 등 지급보증 청구 사유가 발생하였는데,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 없는 경우라면 지체없이 발주자에 대해 대금 직접청구를 할 필요가 있음

### 중요!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시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함. 직불청구는 확정일자가 있는 내용증명을 하는 것이 좋으며, 확정일자의 순위에 따라 원사업자의 다른 가압류 채권자에 우선할 수 있어 이를 통해 채권보전이 가능

- 원사업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가 다수 존재할 수 있으므로 직접지급 요청에 대한 확정일자 확보 (직불청구권)가 중요

- 보전채권액(선행 가압류등) <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발주자의 지급 가능

- 보전채권액(선행 가압류등) ≥ 원사업자의 공사대금: 발주자 지급 거절 가능

## 3.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외담대)에 대한 대응

-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지급능력이 부족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원사업자에 대한 외상매출을 담보로 하도급대금을 미리 대출(외담대)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음

### 중요!

※ 외담대의 경우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 비율을 초과할 수 없으며, 상환수수료 지급의무가 발생 하는 예외적 지급수단이므로 하도급법상 규정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다만, 하도급대금 지급 만기일까지 원사업자가 해당 금액을 금융기관에 미상환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대신 상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주의!**

※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것에 대해 반드시 합의할 필요가 없으며,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은 금융채무가 아니어서 워크아웃 시에도 상환의무가 존재하므로 상환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 원사업자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최대한 빨리 보증기관에 하도급대금 보증금 청구가 필요
- 보증기관에 대한 하도급대금 보증금 청구는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만기일이 보증기간 이후라도 가능할 수 있음
- 단,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보증기간은 만기일까지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

**주의!**

※ 추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발생은 지양해야 하며, 원사업자의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워크아웃 불발시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4. 가압류신청 조치

- 원사업자가 기성금을 미지급하는 경우라면 원사업자의 부동산, 공사대금, 예금 채권 등을 확인하여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하고 법원에 가압류신청을 할 필요

**주의!**

※ 원사업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가 많을 가능성이 크므로 빨리 가압류를 해야할 필요

- 워크아웃 신청 중이라도 가압류가 가능
-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발주자 직불 없는 경우 가압류신청\*이 효과적일 수 있음
- \* 예시: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 청구권,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 청구권 가압류 등
- 가압류 신청 시 제3채무자 자력이 중요하므로 관급공사를 우선적으로 물색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



## 5. 유치권 조치

- 원사업자가 기성금을 미지급하였는데 ① 유치권 목적물이 존재(예: 공사 중이라면 독립된 건물)하고, 이에 대한 ② 적법한 점유가 가능하고 ③ 배제특약이 없는 경우라면 유치권 행사가 필요할 수 있음
- 적법한 점유 및 점유의 유지(출입장치 등 필요) 등이 필요
- 유치권 행사가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독립된 건물이어야 하며, 이때 기동·지붕·주벽이 있어야 독립된 건물로 인정
- 원사업자 소유가 아닌 공사장 토지의 경우 유치권 행사가 불가능
- 유치권의 행사는 원사업자 및 발주자 사업 진행에 방해가 되므로 사실상 우선변제 효과가 있음
- 워크아웃 불발시 회생절차 관리인과 협상이 가능하지만 점유의 유지는 필요할 것

### 주의!

※ 공사방해금지 및 공사장 출입금지 가처분 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유치권 행사 적법요건을 확인하고 향후 제기될 가처분 등에 대비해야하며, 대비가 미흡할 경우에는 유치권 상실 및 손해배상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6. 대물변제

- ① 당사자의 합의가 있고, ② 현실의 이행이 가능하며(부동산의 경우 등기 이전 등), ③ 사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면,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간 합의에 따라 미지급 하도급대금에 상응하는 대물변제도 가능할 수 있음

### \* 사해행위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도 자기의 재산을 은닉·손괴 또는 제3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총 재산을 감소하는 행위를 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



- 하도급법상 대물변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나 원사업자의 지급불능 등 예외적으로 가능
- 여러 대물변제 가능 목적물 중에 장래 시세를 고려하여 신속하게 목적물을 결정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음
- 또한 담보형 대물변제, 변제 같음형 대물변제\* 등에 대한 합의를 명확하게 해야 함

**\* 대물변제 종류**

- ① 담보형 대물변제: 대금청구 후 대금 미지급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
- ② 변제같음형 대물변제: 소유권 이전으로 종료됨



**관련 법규정**

**❖ 하도급법 제17조(부당한 대물변제의 금지)**

- ① 원사업자는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 또는 금지된 경우
  2. 원사업자에 대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고, 수급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 ② 원사업자는 제1항 단서에 따른 대물변제를 하기 전에 소유권, 담보제공 등 물품의 권리·의무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 ③ 물품의 종류에 따라 제시하여야 할 자료, 자료제시의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의4(대물변제 인정사유)**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서 “그 밖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할 수 밖에 없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금융채권자협의회가 원사업자에 대하여 공동 관리 절차 개시의 의결을 하고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를 말한다.

## 2. 법인회생시 대응방안

### 가. 법인회생 주요 내용 및 절차

- **(개념)** 법인회생(법정관리)은 법인의 계속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루어짐
- 법인회생 시 사업의 재건과 영업의 계속을 통해 채무를 변제
- 법인회생 시 법원이 기업활동을 관리·감독하며 관리인\*을 지정

#### \* 관리인

-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며 법원은 관리인을 선임
- 업무: 개시결정 등의 내용 숙지 후 업무 수행(채권자목록, 채권신고통보, 채권조사), 회생계획안 제출 전후로 이해관계인 설득 등

- 이때 법원의 직권으로 채무 면제, 채무 조정 등이 이루어짐

- 법정관리를 신청하는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모든 채권·채무관계가 동결\*되는 것이 특징

\* 법원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개별 강제집행절차의 중지명령,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할 수 있음.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이 금지될 수 있음

#### < 법인회생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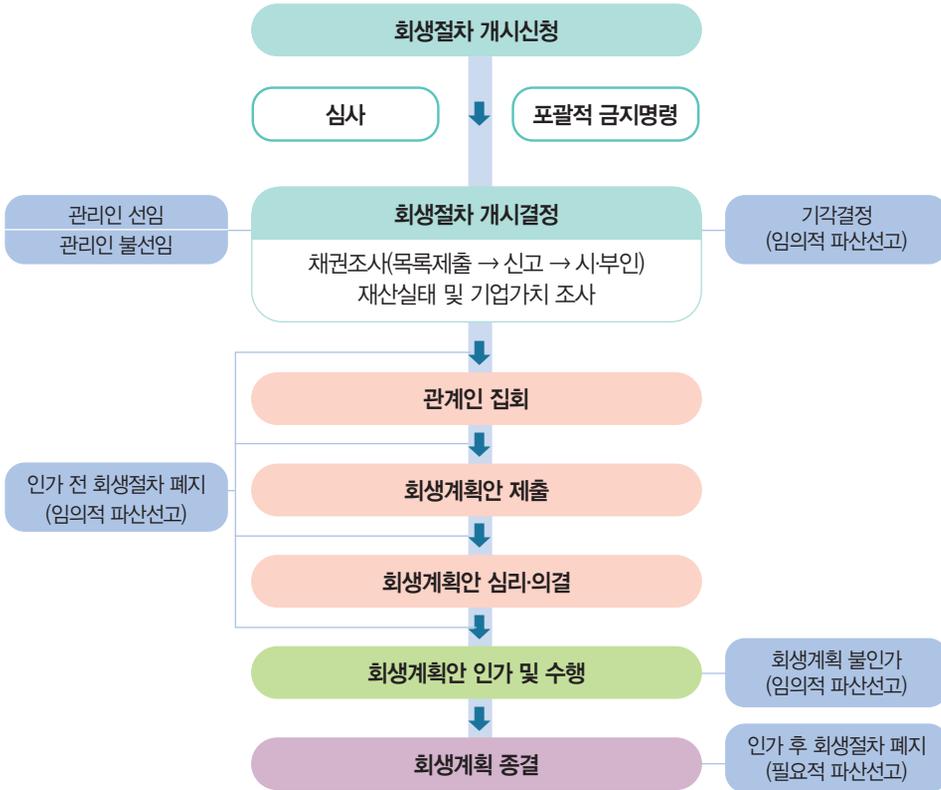
구분	내용
근거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주관	법원(In-Court Restructuring)
개시 결정	회생법원 결정
대상 채무	채권·채무 동결
종료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가 시작 → 관리인·회생채권자·회생담보권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직권에 의해 종결
특징	법원 직권으로 채권 관계 조정 용이



- **(절차)** 회생절차의 신청 → 현장검증 및 대표자 심문 → 회생절차 개시결정 → 채무의 확정 및 기업가치 조사 → 회생계획안 제출 → 회생계획안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 또는 서면결의 → 회생계획 인가 → 회생계획 수행 → 회생절차 종결



〈 법인회생 절차 〉





## 나. 법인회생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대응 방안

### 1. 채권신고

-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함 (채무자회생법 제148조)

#### \* 신고기간

관리인이 회생채권자의 목록, 회생담보권자의 목록과 주주·지분권자의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하는 기간의 말일부터 1주 이상 1월 이하(채무자회생법 제50조)

- 기본적으로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채권의 경우에는 회생채권으로, 회생절차 개시 후 원인채권인 경우는 공익채권으로 구분

#### 공익채권과 회생채권

- ① 공익채권: 회사의 정리절차나 재산관리를 위해 쓴 비용에 대한 청구권
  - 회생절차와 관련없이 수시로 변제 가능
  - 일반회생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 가능
- ② 회생채권: 회생 절차 개시 전에 발생한 재산상의 청구권
  -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이해관계인에게 손실 발생 가능

#### 구분

※ (원칙) 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채권 → 회생채권, 회생절차 개시 후 원인채권 → 공익채권

※ (예외)

1. 원사업자 근로자의 임금(회생절차 개시 전 원인채권): 공익채권으로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
2. 회생절차 개시전 완성된 하도급 공사대금: 회생채권
3. 회생절차 개시전후에 걸쳐 완성된 하도급 공사대금: 공익채권

- 회생채권은 법원의 채무면제, 조정(감액), 상환유예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수급사업자에게 공익채권이 회생채권보다 유리할 수 있음
- 수급사업자 채권이 회생채권과 공익채권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한 판단하여 신고해야 함
  - 다만, 구분이 어려운 경우, 대금청구 등에 유리한 공익채권으로 신고할 필요가 있음



## 주의!

※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공익채권 또는 회생채권인지 판단하여 **신속하게 하도급대금 채권을 신고**해야 함. 공익채권인지 회생채권인지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익채권으로 신고할 필요**. 공익채권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다 유리하고 공익채권이 아닌 것으로 판정되더라도 불이익이 없음.



## 관련 법규정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회생채권의 신고)

①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 및 주소
2.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3. 의결권의 액수
4.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

② 회생채권 중에서 일반의 우선권 있는 부분은 따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회생채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되는 때에는 회생채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법원·당사자·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신고하여야 한다.

## 2. 신속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청구

■ 원사업자의 회생절차 개시로 하도급대금이 미지급된 경우라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청구가 필요

● 회생절차시 보증 범위 등 보증약관의 검토와 보증기간 내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입증할 필요

- 하도급대금 채권을 확정하는 절차 또한 필요



### 3. 발주자에 직접지급 요청

- 회생절차에서 지급보증이 없는 경우 등 사유가 발생하면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 수급사업자는 회생채권자 겸 직불청구권자라는 이중의 지위를 가지며, 특히 회생채권자로 분류된 경우 직불청구의 실익이 있음
  - 법인 회생절차에서 채권자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에게 직불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회생채권 신고후에 직불청구를 권장
  - 회생채권 신고전에 직불청구시 하도급대금 채권의 채무자는 원사업자에서 발주자로 변경되어 수급사업자는 더이상 원사업자의 채권자가 아니게 됨
- 이에 따라 발주자 직불청구 후에는 원사업자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가 불가능

**주의!**

※ 발주자에 직접지급 청구 후에는 회생절차 채권신고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 채권신고 후 발주자에 직접지급** 청구하는 것을 권장

### 4. 계약이행/해지 여부 판단

- 회생절차 관리인은 회생절차 개시 당시 완성전 하도급의 계속이행 청구를 하거나 해지 선택이 가능
  - 관리인이 계속 이행을 청구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공익채권으로 청구가 가능
  - 관리인이 해지를 선택한 경우라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및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이 될 수 있음
- 관리인이 해지 결정을 한 경우 하도급대금 채권 확정 등의 조치가 필요
- 관리인에게 선택에 대한 응답을 최고하여 최고 받은 후 30일 이내 응답하지 않았다면 해지권 포기로 간주되어 수급사업자는 빠르게 법적지위가 결정될 수 있음



### 주의!

※ 기업회생이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급사업자 입장에서 계속이행(공익채권)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경영판단이 필요한 사항임



### 관련 법규정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①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관리인은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후 또는 제240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이 있은 후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없다.
- ② 제1항의 경우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③ 법원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 5. 가압류 등 보전절차

■ 회생절차 개시 전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회생절차에서 가압류는 권장하지 않음

● 반면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회생담보권\*이 인정되므로 원사업자 자력이 의심되는 경우 유치권 등을 활용할 필요

#### \* 회생담보권

- ① 유치권: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 ② 질권: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받은 담보물권
- ③ 저당권: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점유를 옮기지 않고 그 채권의 담보로 제공된 목적물(부동산)에 대하여 일반 채권자에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

### 3. 법인파산시 대응방안

#### 가. 법인파산 주요 내용 및 절차

■ **(개념)** 법인파산은 법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고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들에게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분배하는 절차

- 법인회생 절차 진행이 더 이상 불가능한 경우, 법인회생 절차에서 법인파산 절차로 넘어감
- 법원이 관재인\*을 지정한다는 점에서 채권단이 주도하는 워크아웃과 구별

#### \* 관재인

-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
- 업무: 채권자협의회에 자료제공, 파산재단의 점유·관리 및 처분, 재산가액의 평가, 배당, 파산경과의 보고 등

- 포괄적 금지명령으로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이 금지되고 회사재산 동결이 이루어짐

#### 〈 법인파산 개요 〉

구분	내용
근거법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주관	법원
파산선고	법원 파산결정
종료	채권자집회가 종결된 때, 법원은 파산종결의 결정을 함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공고)
특징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그 효력을 잃음

■ **(절차)** 파산신청 → 파산선고 → 파산관재인 선임 → 파산재단의 현금화 → 채권자 집회 및 채권조사 → 재단채권 변제, 파산채권 배당 → 계산보고를 위한 채권자집회 → 파산종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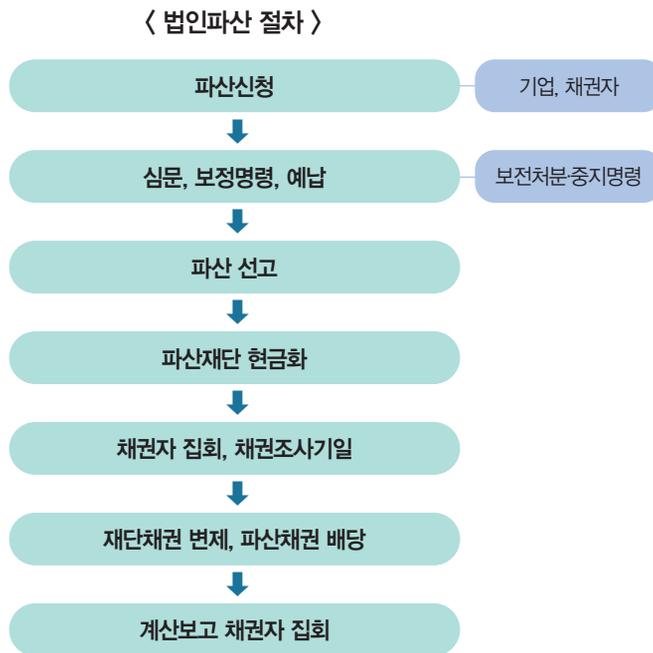
- 파산신청서 접수 후 또는 파산신청인 심문 후 파산선고 절차가 진행





● 파산관재인은 파산선고 직후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하고, 채권자들로부터 신고된 채권의 존재 여부, 액수, 우선순위 등을 조사

-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현금화가 완료되면 파산관재인은 임금, 퇴직금, 조세, 공공보험료 등의 재단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일반 파산채권자들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



## 나. 법인파산에 대한 하도급업체의 대응 방안

### 1. 채권신고

- 수급사업자는 파산채권자로서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신속하게 신고해야 함  
(채무자회생법 제447조)
- 기본적으로 파산선고 전 원인채권의 경우에는 파산채권으로, 파산절차 수행에 필요한 비용 채권은 재단채권으로 구분



### 재단채권과 파산채권

- ① 재단채권: 공동의 이익이나 파산절차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위해 우선적으로 변제 받게 되는 우선채권
  - 조세채권, 임금채권 등
- ② 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인해 채권자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총재산으로부터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 물품대금 등 일반적인 채권

- 현금화한 한정 자원이 재단채권에 우선변제되고 파산채권에는 잉여배당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급사업자에게 재단채권이 파산채권보다 유리할 수 있음
  - 수급사업자 채권이 파산채권 및 재단채권 중 어디에 속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요구됨
  - 재단채권의 경우 신고가 불필요하며, 파산채권 미신고시 채권 행사가 불가능하므로, 채권 신고시 불분명하다면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필요
  - 재단채권자는 파산절차에 구속되지 않으며 파산관재인에게 상시 이행청구가 가능함

### 주의!

※ 채권신고시 재단채권인지 파산채권인지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필요.

## 2.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청구

- 원사업자의 파산절차 개시로 하도급대금 미지급된 경우라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금 청구가 필요
- 파산절차시 보증범위 등 보증약관 내용의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



### 3. 발주자에 직접지급 요청

- 수급사업자는 파산권자 겸 직불청구권자라는 이중의 지위를 가지며, 특히 파산채권자로 분류되어 배당액 부족의 경우 직불청구의 실익이 있음
- 파산절차에서 채권자로 신고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에게 직불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파산채권 신고후에 직불청구를 권장
- 파산채권 신고전에 직불청구시 하도급대금 채권의 채무자는 원사업자에서 발주자로 변경되어 수급사업자는 더이상 원사업자의 채권자가 아니게 됨
  - 이에 따라 발주자 직불청구 후에는 원사업자 파산절차에서 채권신고가 불가능

#### 주의!

※ 발주자에 직접지급 청구 후에는 파산절차 채권신고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파산절차 채권신고 후 발주자에 직접지급 청구**하는 것을 권장

### 4. 계약이행/해지 여부 판단

- 관재인은 파산선고 당시 완성전 하도급의 계속이행 청구를 하거나 해지 선택이 가능
- 관재인이 계속 이행을 청구한 경우 수급사업자는 재단채권으로 청구가 가능
- 관재인이 해지를 선택한 경우라면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및 손해배상채권은 파산채권에 해당
  - 관재인이 해지 결정을 한 경우 하도급대금 채권 확정 등의 조치가 필요
  - 관재인에게 선택에 대한 응답을 최고하여 최고 받은 후 30일 이내 응답하지 않았다면 해지권 포기로 간주되어 수급사업자는 빠르게 법적지위가 결정될 수 있음

#### 주의!

※ 재단채권으로 분류되더라도 지급가능한 현금이 없을 수 있으므로 수급사업자 입장에서 계속이행(재단채권)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볼 수 없으며 경영판단이 필요한 사항임



■ 수급사업자도 계약해지가 가능 (민법 제674조)



관련 법 규정

❖ 민법 제674조(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 ① 도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수급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급인은 일의 완성된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수에 포함되지 아니한 비용에 대하여 파산재단의 배당에 가입할 수 있다.
- ② 전항의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해제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5. 가압류 등 보전절차

■ 파산절차 개시 전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파산절차에서 가압류는 권장하지 않음

● 반면 유치권, 질권, 저당권 등 별제권\*이 인정되므로 원사업자 자격이 의심되는 경우 유치권 등을 활용할 필요

\* 별제권

- 파산재단에 속하는 특정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V

## 분쟁조정 및 신고 등

대금지급·지급보증 관련 문제 발생 시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와 상담·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합니다.





## ■ 불공정거래행위 신고

●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법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신고하여 그 처리과정 및 결과를 통지받고 싶을 시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음

- 온라인 신고: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 민원참여 → 불공정거래 신고

- 서면 신고: 원사업자의 소재지가 있는 지방사무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상담〉

연락 기관	담당 지역	연락처
상담실	하도급법 질의 및 전화상담	044-200-4010
서울사무소	서울, 인천, 경기, 강원지역	02-2110-6144~9
부산사무소	부산, 울산, 경남지역	051-460-1041~7
광주사무소	광주, 전남북, 제주지역	062-975-6841~5
대전사무소	대전, 충남북, 세종지역	042-481-8020~1
대구사무소	대구, 경북지역	053-230-6342~4

● **(익명제보센터)** 하도급대금 미지급, 지급보증 회피 등 법위반행위에 대해 보복이 두려워 신고 하기가 어려운 경우 익명제보센터를 이용할 수 있음

- 익명 신고: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 → 민원참여 → 하도급 익명제보센터 제보

\* 공정위 익명제보센터는 제보자의 인적사항, 아이피(IP) 주소를 별도로 수집하지 않아 제보자의 신원이 절대로 드러나지 않음. 아울러, 조사단계에서도 제보자의 신원이 추정되지 않도록 조사시기, 조사범위를 신중적으로 조정하고 있음.



## ■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

- (조정원 분쟁조정신청) 하도급대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피해구제 등을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온라인 분쟁조정 시스템(<https://fairnet.kofair.or.kr/>)'을 통해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조정원 상담서비스 '분쟁조정 콜센터 (1588-1490)'에 적극 질의
-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에 설치된 건설하도급분쟁조정 협의회를 통해서도 상담 및 분쟁조정을 신청 가능

### 건설하도급분쟁 관련 상담분쟁조정 기관

- 한국공정거래조정원(1588-1490, <https://fairnet.kofair.or.kr/>)
- 대한건설협회 및 대한전문건설협회(02-549-2105~6, <https://csdmc.or.kr>)

## ■ 기타 상담·애로사항 문의

- 국토교통부애로신고센터 신고(하도급대금 체불 등 애로사항 지원)

- 국토지방관리청 공정건설지원센터 : 1577-8221
- 대한전문건설협회 : 02-3284-1020 또는 '코스카톡-신문고' 활용

- 대한전문건설협회 법률상담

- 02-3284-1087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상담, 고문변호사)



건설분야 하도급대금 보호를 위한  
매뉴얼